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109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7. 9.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9. 12. 접수 제14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원고는 2016. 3. 22.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5. 24.경 주식회사 D의 위임을 받아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587751호로 C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9. “C는 원고에게 40,294,941원 및 그 중 26,185,502원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는 1998. 3. 16. 사망하여, F, 피고, G, H, I, C, J, K, L, M, N, O, P, Q이 E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는데, 그 중 C의 상속지분은 2/17이다.
- 2)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7. 9.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9. 12. 접수 제140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성군, 홍성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가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모친인 F을 장녀인 피고가 부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C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원상회복을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채권의 만족)이 소액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행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가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아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

[별지]

경북 의성군 R 답 1,234㎡. 끝.

